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9. 11 선고 2023나15262(본소), 2023나15279(반소) 판결
[공사대금 · 노무비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9. 11 선고 2023나15262(본소), 2023나15279(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10500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론 종결 2024. 7. 17.

판결 선고 2024. 9. 1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105001(본소),
2022가합102436(반소)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A에게 154,55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원고 B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42,967,010원과 그중 2,315,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4.부터, 60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8.부터, 3,69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3.부터, 16,86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4.부터, 14,175,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1.부터, 5,312,010원에 대하여는 2021.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이로 인하여"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로부터 2021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합계 42,967,01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인 것이 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 "이유 없다" 뒤에 "(원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28, 29, 32, 3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2021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합계 42,967,01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임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에는 원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 B은 피고의 이 사건 잔여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제2차 기성지급계약으로 하루라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이 해지되도록 정하였음에도, 2021. 4. 27.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9호증의 10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2021. 4. 27. 철근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잔여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 B이 무단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제2차 기성지급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기우종

판사이형원

판사신옥영

1)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 부분은 패소한 원고 주식회사 A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